

(비공식 번역문)

투자위원회 고시

제7/2559호

클러스터 형태의 특별경제구역 투자촉진 정책에 따른
투자촉진 대상 활동 목록의 추가 개정

불기 2520년(1977년) 투자촉진법 제16조 두 번째 단락과 제18조, 제31조, 제35조에 의거하여 자동차 및 부품 클러스터, 디지털 클러스터,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자동화 및 로봇산업 클러스터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위원회는 클러스터 형태의 특별경제구역 투자촉진정책에 관한 투자위원회 고시 제10/2558호(2015.10.27)를 추가적으로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 투자위원회 고시 제10/2558호(2015.10.27)에 따라 4.1.1 자동차 및 부품 클러스터, 4.1.4 디지털 클러스터 등을 투자촉진 대상 활동 목록에 추가한다.

4.1.1 자동차 및 부품 클러스터

활동	조건
4.8.6.11 트랜스미션 케이스	
4.8.8.2 에어백 인플레이터(Airbag Inflator), 가스 발생장치(Gas Generator), 가스 발생제(Gas Generant)	

4.1.4 디지털 클러스터

활동	조건
5.6.2 임베디드 시스템 설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프로젝트는 일렉트로닉스 설계 인력의 연봉으로 최소 150만 바트를 지출해야 한다.2. 투자촉진 사업의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촉진 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위탁 생산을 불문하고 촉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상업용 다운스트림 생산으로도 사업 수입으로 간주한다.3. 프로젝트가 촉진을 받았거나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과학기술파크에 위치하는 경우, 법인소득세 면제 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5년간 순이익에 대한 법인소득세 50%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p>5.7.3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 예측분석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 정보 통합 및 분석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 및 제공 - 정보 보안 및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를 포함한 첨단 기술 장치용 소프트웨어 개발 - 제조업 지원용 산업 소프트웨어 개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젝트는 IT 직원의 연봉으로 최소 150만 바트를 지출해야 한다. 2. 정보통신기술부에서 승인한 또는 명시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포함해야만 한다. 3. 투자자본(토지비용 및 운영자금 제외)이 1,000만 바트 이상인 프로젝트는 완전 조업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SIPA로부터 품질표준인증을 획득하거나 CC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품질표준 인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1년간의 법인소득세 면제 혜택이 취소된다. 4. 투자촉진을 받은 소프트웨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 제공에 의해 발생한 수입은 해당 투자촉진 사업의 수입으로 간주한다.
<p>5.9 디지털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 플랫폼 - 매니지드 서비스(Managed service) - 디지털 건축 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서비스 (핀테크, 디지털 기술, 의학기술, 농업테크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젝트는 디지털 전문가를 고용해야만 하며, 투자금은 백만 바트 이상이어야 한다. (토지비용 및 운영자금 제외) 2. 프로젝트는 위원회에서 승인한 디지털 서비스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3. 투자금이 천만 바트 또는 그 이상인 (토지 비용 및 운영자금 제외) 프로젝트의 경우, 완전 조업 개시일로부터 2년 내 ISO 20000 또는 정보통신부의 승인을 받은 기타 품질표준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법인 소득세 면제 혜택 기간이 1년 감소한다. 4. 투자촉진을 받은 디지털 서비스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 제공 또는 판매로 발생한 수입은 해당 투자촉진 사업의 수입으로 간주한다. 5. 프로젝트는 투자촉진 신청 전에 정보통신기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7.9.2.1 과학기술파크 (Science and Technology Park)</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젝트는 창업보육센터(Entrepreneurship Incubation Center)를 갖추어야 한다. 2. 프로젝트는 국내 및 국제 통신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3. 지속적인 전력공급 백업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4. 위원회에서 승인한 바에 따른 기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p>7.9.2.4 혁신보육센터 (Innovation Incubation Center)</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요통신 시스템으로 광통신망(FTTX)을 갖추어야 한다. 2. 지속적인 전력공급 백업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프로젝트는 사업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멘토)가 있어야 한다. 4. 프로젝트는 기술 생태계 또는 기술 커뮤니티를 조성할 계획이 있어야 한다. 5. 전체 서비스 지역은 300m² 이상이어야 한다. . 6. 프로젝트는 위원회에서 승인한 기술이나 기술개발과 관련된 교육훈련이 있어야 한다.
--	--

2. 투자위원회 고시 제10/2558호(2015.10.27)에 따라 4.1 슈퍼 클러스터 목록에 다음과 같이 4.1.5 및 4.1.6 항목의 클러스터를 추가한다.

2.1 4.1.5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프로젝트는 방콕, 싸뭏쁘라칸, 나컨빠툼, 빠툼타니, 차츄싸오, 촌부리, 라영, 치양라이, 핏싸눌록, 나컨싸완, 롱부리, 나컨라차씨마, 쑤랏타니, 송클라에 위치해야 한다.

활동	조건
<p>4.11 항공기 또는 항공우주 장비의 제조 또는 수리</p> <p>4.11.1 항공기 또는 항공기 부품의 제조 예) 기체, 주요부품(엔진 및 부품, 프로펠러), 기기(항공기록장치, 레이더), 장비 및 기타 부품</p> <p>4.11.2 탑재 장치 및 장비의 제조 (일회용 및 재사용 가능한 항공 용품 제외) 예) 의자, 구멍조끼, 트롤리, 기내 주방(galley) 등</p> <p>4.11.3 항공기 또는 항공기 부품의 수리</p> <p>4.11.5 항공 장비 및 장치의 제조 예) 로켓/ 로켓의 장치 또는 장비/ 우주선/ 우주선 부품/ 추진 장치와 보조 장치 등</p>	<p>프로젝트는 지구정보우주기술개발청(GISTDA, Geo-Informatics and Space Technology Development Agency) (공공기관)과 같은 유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4.11.6 항공운영시스템 예) 수색, 탐지, 네비게이션, 안내, 항공, 항로 시스템 및 계기판 등</p>	<p>프로젝트는 지구정보우주기술개발청(GISTDA, Geo-Informatics and Space Technology Development Agency) (공공기관)과 같은 유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7.9.1.7 항공기 또는 항공산업구역 또는 산업단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체 면적은 100라이 이상 되어야 한다. (1라이는 약 1,619㎡정도 됨) 2. 프로젝트는 전체 또는 일부 영역을 보세 창고 또는 자유구역으로 할당해야 한다. 3. 프로젝트는 항공기 및 부품 유지 및 수리 센터를 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4. 프로젝트는 도로, 빗물 배수, 홍수방지 시스템, 수도, 상수처리시스템, 폐수처리 시스템, 통신 및 전력 시스템, 화재방지 시스템, 산업폐기물 처리 시스템, 적합한 보안 시스템 등 이사회가 승인한 바에 따라 충분한 공공 유틸리티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프로젝트는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4.1.6 자동화 및 로봇 산업 클러스터**

<p style="text-align: center;">활동</p>	<p style="text-align: center;">조건</p>
<p>4.5.1 엔지니어링 설계를 통한 자동화 기계 및/또는 자동화 장비 제조</p> <p>4.5.4 로봇 또는 자동화 장비 및/또는 자동화 부품 조립</p>	<p>임베디드 시스템을 사용한 운영제어 시스템 설계 과정이 있어야 한다.</p>

3. 투자위원회 고시 제10/2558호(2015.10.27)에 명시되어 있는 전기 제품, 전자 및 통신 장비 클러스터의 카테고리 5.1.1의 활동 조건은 종료하고 아래의 조건으로 대체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활동</p>	<p style="text-align: center;">조건</p>
<p>5.1.1 첨단 전기 제품의 제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물인터넷이 적용 가능해야 한다. 또는, 2. 더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허용하는 회로 또는 운영제어시스템, 처리 시스템, 임베디드 시스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갖추어야 한다.

4. 투자위원회 고시 제10/2558호(2015.10.27)에 명시되어 있는 클러스터 개발지원 사업 카테고리 4.3에 투자촉진 대상 활동 목록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활동	조건
5.6.1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설계 5.6.2 임베디드 시스템 설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렉트로닉스 설계 인력에 대한 연봉으로 최소 150만 바트를 지출해야 한다. 2. 투자촉진 사업의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촉진 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위탁 생산을 불문하고 촉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상업용 다운스트림 생산으로도 사업 수입으로 간주한다. 3. 프로젝트가 촉진을 받았거나 위원회가 승인한 과학기술파크에 위치하는 경우, 법인소득세 면제 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5년간 법인소득세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5.7.1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IT 직원의 연봉으로 최소 150만 바트를 지출해야 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진흥청(SIPA)이 규정한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을 갖추어야 한다. 3. 투자자본(토지비용 및 운영자금 제외)이 1,000만 바트 이상인 프로젝트는 완전 조업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SIPA로부터 품질 표준 인증을 획득하거나 CMMI (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품질 표준 인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소득세 면제 혜택 기간이 1년 감소한다. 4. 투자촉진을 받은 소프트웨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 제공에 의해 발생한 수입은 해당 투자촉진 사업의 수입으로 간주한다.
5.7.3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젝트는 IT 직원의 연봉으로 최소 150만 바트를 지출해야 한다. 2. 프로젝트는 정보통신기술부에서 승인한 또는 명시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포함해야만 한다. 3. 투자자본(토지비용 및 운영자금 제외)이 1,000만 바트 이상인 프로젝트는 완전 조업 개시일로부터

활동	조건
	<p>2년 이내에 SIPA로부터 품질 표준 인증을 획득하거나 CMMI (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품질 표준 인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법인소득세 면제 혜택이 취소된다.</p> <p>4. 투자촉진을 받은 소프트웨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 제공에 의해 발생한 수입은 해당 투자촉진 사업의 수입으로 간주한다.</p>
7.9.2.4 혁신보육센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요통신 시스템으로 광통신망(FTTX)을 갖추어야 한다. 2. 지속적인 전력공급 백업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프로젝트는 사업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멘토)가 있어야 한다. 4. 프로젝트는 기술 생태계 또는 기술 커뮤니티를 조성할 계획이 있어야 한다. 5. 전체 서비스 지역은 300㎡ 이상이어야 한다. 6. 프로젝트는 위원회에서 승인한 기술이나 기술개발과 관련된 교육훈련이 있어야 한다.

5. 우주혁신창조파크(SKIP, Space Krenovation Park)는 위원회 고시 '투자촉진 정책 및 기준 제2/2557호(2014.12.3)' 8.3번에 따라 위원회가 승인한 과학기술파크로 지정되었다.

본 고시는 2016년 2월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일: 2016년 4월 11일

(General Prayut Chan-o-cha)
투자위원회 의장